

# “국가 100년 대계 위해 IPTV 조속 도입해야” 협회, 국회 방송통신특위에 ‘건의서’ 전달

협회는 7월5일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지원단과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에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 도입정책 지연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IPTV 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마련과 뉴미디어에 걸맞은 규제제도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IPTV서비스 조속 도입 건의서 「전문」

### 1. 현황

#### ○ 미래 미디어의 변화

- 네트워크 및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통신과 방송의 특성을 모두 지닌 IPTV(통신망을 이용하여 VOD 등 멀티미디어 정보제공), DMB 등 신규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 ITU 텔레콤 월드 2006, 국제가전쇼 ‘CES2007’ 화두는 IPTV였고 다보스 포럼 2007에서 빌게이츠는 “TV를 보는 방식은 5년 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IPTV는 개인의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고객들의 1인 미디어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Media 2.0적속성도 가지고 있음 (Media2.0은 Web2.0에 대응하는 미디어 측면에서의 혁명을 의미)

#### ○ 해외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가속

- 해외 각국은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하여 법령 정비 및 융합 서비스 관련 별도의 법을 제정, 운영

- 또한 2003년 홍콩 PCCW, 이탈리아 Fastweb 등의 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를 시작으로 ‘05~’06년 전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가 대부분 IPTV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

구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법령	통합(통신법)	통합법 및 기존법 유효 (커뮤니케이션법)	통합 (방송통신법)	분리
규제기관	통합(FCC)	통합(Ofcom)	통합 (통신부)	통합 (총무성)
방송시장 진입조건	승인	통합승인 (네트워크 사업권)	승인	등록

제공시기	IPTV 제공사업자	제공서비스명
2005년	Telecom Italia(이탈리아)	AliceHome TV
	Verizon(미국)	FIOS TV
2006년	Telekom Austria(오스트리아)	aonDigitalTV
	Telefonica O2(체코)	O2 TV
	DT(독일)	T-Home
	KPN(네덜란드)	Mine TV
	Swisscom(스위스)	Bluewin TV
	AT&T(미국)	U-Verse TV
	BT(영국)	BT Vision

### ○ IPTV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 ITU-T FG(IPTV)에서는 2007년 말까지 IPTV 국제표준을 완료할 예정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세계 각국은 IPTV 관련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고

- 한국은 IPTV 상용화 서비스는 늦어지고 있지만 05년도 IPTV 관련 핵심기술 39건이 국제표준으로 반영되면서 IPTV관련 국제표준 주도권과 시장에서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IPTV관련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2005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45% (3192건)	29%	16%	7%	3%

## 2. 도입 필요성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간편하고 편리한 조작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VOD 서비스, 전자상거래, 포털 서비스, 인터넷뱅킹, 게임 등 인터넷의 풍부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해지고

- UCC 등 개인형, 참여형 미디어 이용형태의 적극 수용과 국민의 IT서비스 선택권 부여, 정보 제공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 새로운 산업영역 및 사업모델 창출

- 차세대 IT산업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인 IPTV 서비스는 차세대 네트워크, DTV, STB(Set-Top Box), 콘텐츠 분야 등에 대형 투자를 수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 IPTV 서비스 상용화가 계속 지연될 경우 수조 원대의 산업발전 기회가 상실되고, 기투자한 인력, 기술, 개발비 등 국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 IT분야의 국가경쟁력강화

-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 보편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12년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06년 12월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지상파 및 SO)의 디지털방송 보급률은 24%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또한 2012년 디지털 방송의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동인이 필요하며, 이는 IPTV 서비스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가능

## 3. 주요이슈

### ○ 통신사업자 진입제한

- IPTV서비스가 인터넷망과 동일한 설비 및 선로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특성상 통신사업자의 자회사를 통한 IPTV 서비스 제공은 중복투자, 효율성 저하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네트워크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 통신사업자가 방송시장의 지배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SO사업자가

컨텐츠 지배력 확보 등 수직계열화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으로도 Verizon(미국), AT&T(미국), BT(영국), Belgacom(벨기에), DT(독일)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IPTV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 사업권역 관련

- 현재 IPTV서비스를 지역별(권역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터넷망은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되어 있어 권역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현재 IPTV서비스를 제공중인 프랑스(FT, Free, Neuf), 영국(BT), 독일(DT), 이탈리아(Fastweb), 스페인(Telefonica)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권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지역권역 규제시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또는 전국단위의 디지털 전환 지연초래, 지역권역별 서로 다른 서비스 모델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성장 우려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측면에 한계가 있음

### ○ 사업허가 방식

- IPTV서비스의 공익성,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전송사업자(IPTV사업자)에게도 일정부분의 책임과 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나,

- IPTV는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서비스가 등장하여 시장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등록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고객선택형 VOD서비스에 방송과 동일

한 규제적용은 인터넷 방송의 규제과잉 및 신규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지며, 이는 향후 IPTV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IPTV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은 공히 IPTV 관련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론상 각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할 개연성 상존함

-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한도 산식차이로 방송법에 의한 외국인 지분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외국인 지분율보다 높아져 IPTV 서비스 진입시 제한이 될 수 있고,

- 현재 서비스를 준비중인 몇몇 포털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 제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미 방송법상 외국인 지분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 4. 건의 사항

### ○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 지양하고 국가 100년 대계 생각해야

- 위성방송사업자, DMB사업자, DTV전송방식 결정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신규 미디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규제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간 이견이나 갈등은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복지구현을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 이해관계자의 기존 영역보호 및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소모적인 감정적 대립이 대부분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신규서비스 도입정책 지연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 그 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사업들이 지금까지도 정상궤도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무엇이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결정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요청함

### ○ IPTV 상용화를 위한 신속한 제도마련 필요

- 이미 국내 관련업체에서는 IPTV관련 기술 및 장비개발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어,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한국은 세계 1위 초고속인터넷 보급율과 CDMA, WiBro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여 IT 강국 위상을 지켜왔으나, 최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의 하락 등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IPTV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의 새로운 IT 성장동력으로서의 IPTV관련 산업육성이 절실히 필요함

### ○ 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적용 필요

- 현재 통신사업자의 진입제한, 지역권역 제한, 망개방, 허가방식 등 기존 방송계의 경직된 규제체계를 뉴미디어인 IPTV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 IPTV서비스는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와 콘텐츠산업 활성화 보장, 권역구분이 없는 IP 네트워크의 효율성, 후발 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

여건조성, IPTV서비스의 기술 및 사업적 특성 등으로 현재 요구되고 있는 규제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아직 시장에 출시도 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내용규제의 효율성과 뉴미디어 도입을 통해 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 바람직하지 못함

## 5. 기대효과

- 2010년 전세계 IPTV 가입자수는 5,100만명, IPTV 관련 시장규모는 128억불 창출을 예상하고 있음 ('06년, MRG 보고서, IPTV Global Forecast)
- IPTV서비스를 통한 국내산업 기여도 역시 2013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12.9조, 부가가치 창출효과 5.8조, 고용창출효과가 7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05년 5월, ETRI)
- 또한 통방융합서비스(IPTV포함)를 통한 국내 산업 기여도는, 2013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157.8조, 부가가치 창출효과 73.1조, 수출유발효과 40조, 고용창출효과 116.9조로 예상되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07년 3월, ETRI)
- 또한, 융합서비스(IPTV)를 통해 국내 콘텐츠의 용이한 해외 보급체계를 확보하여 한류의 확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